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2월 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에 따라 인상·통일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14조의2)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세액공제의 범위를 상향 확대하고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중 하나만을 신청 : 250원 → 800원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 : 600원 → 1,600원
- 우리구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